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537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사천용현 3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410호(2020.5.29.)로 승인(변경) 고시된 사천용현 3BL 공공주택(공공분양) 건설사업계획을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20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사천용현 3BL 공공주택(공공분양) 건설사업

2. 사업시행자

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사천용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

(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, 송지리, 구월리 일원)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[수요부족으로 인한 장기 미착공 및 사천시 행정타운 조성계획]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